

## 목구조기술자 자격증 [ ] 신규발급 [ ] 재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직업	근무처	(전화번호: )
신청내용	기술종류	등급	구분
			[ ]신규발급, [ ]재발급
발급내용 (재발급)	발급번호	발급일	발급기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목구조기술자 자격증의 [ ]신규발급 [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산림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신규발급 신청의 경우 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이수 증명서 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교육과정 이수 증명서 또는 대학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합니다) 다.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합니다) 라. 신청인의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2.5cm, 세로 3cm로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2. 재발급 신청의 경우 가.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되거나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자격증 원본(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자격증 원본 및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다. 신청인의 사진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신규발급 시)	1.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해당자에 한정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산림청장	→	기술자격요건 검토 산림청장	→	결정 산림청장	→	발급/재발급 산림청장
---------------	---	------------	---	-------------------	---	------------	---	----------------